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83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한준호 · 김병주

주철현 · 이용우 · 임호선

장철민 · 홍성국 · 이수진

정청래 · 최혜영 · 김남국

장경태 · 이원택 · 김민철

오영환 · 신현영 · 오기형

이성만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2조제5호).

법률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일반이용자"란 1년 미만의	5
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	
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	
한 교습행위의 교습비(이하	
"이용료"라 한다)를 <u>지불</u> 하고	<u>지급</u>
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	
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.	